

WTO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 현황 및 대응방안

- 주류에 대한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



김영환

〈산업자원부 수입과 사무관〉

■ 目 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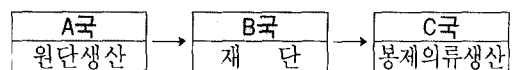
- I. 원산지규정이란 무엇인가
- II. 원산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 III. 주요국의 現行 원산지규정은 어떠한가
- IV. WTO 원산지규정협정에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나
- V.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VI. 통일원산지규정은 현재까지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졌나
- VII. 주류에 대하여는 무엇이 논의되고 있나
- VIII. 우리나라의 대응경과는 어떠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었나
- IX. 향후 전망은 어떠하며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I. 원산지규정이란 무엇인가

1. 물품의 생산국을 판정하는 기준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무엇인가? 원산지규정은 한마디로 '물품의 생산국을 판정하는 기준'이다. 어떤 물품의 생산활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1개국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 나라가 원산지가 될 것이므로 판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생산한 부품이나 원료를 수입·가공하는 경우와 같이 생산활동이 2이상의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면 어떤 나라를 원산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아래와 같이 A나라에서 직물의 원단(옷감)을 생산하고, B나라가 디자인·치수조절 공정을 거쳐 재단을 한 후, C나라가 바느질을 해서 양복(봉제의류)을 생산했다면 그 양복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원산지규정이다.



섬유류는 국제무역상 수출국과 수입국의 대립이 심각한 말썽 많은 품목이기 때문에 사실 위의 사례는 유명한 문제이다. 참고로 섬유류

최대 수입국인 미국은 위의 사례에서 '96.7월 이전에는 B국(재단국)을 원산지로 보았으나 지금은 C국(봉제국)을 원산지로 보고 있다.

2. 원산지규정은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원산지규정은 왜 필요한가? 이 물음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무역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이다. 무역제도라 함은 국제무역에 적용되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데,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관련된 무역제도들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한편으로 기업의 부품조달 및 투자전략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원산지규정이 필요한 몇가지 무역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 비특혜 무역제도의 운영

1) 원산지 표시제도

비특혜 무역제도는 관세특혜와 관계없는 무역제도를 말하는데, 가장 알기 쉬운 예로는 물품의 생산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있다. 소비자는 동종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에 따라 품질을 달리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장에서 가격차이도 크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카메라가 2대 있을 때 하나는 'Made in China'라고 표시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Made in Japan'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소비자 인식 및 판매가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원산지 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산지를 표시하려면 먼저 그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판정해야 한다. 이 때 원산지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2) 쿼터제도

쿼터제도는 수출입 물량을 국별로 제한하는 제도로 이 제도 운영에도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섬유 및 의류제품인데, 이들 품목은 국제협정상나라마다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섬유류의 물량은 얼마, 중국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 하는 식으로 품목마다 국별 한도가 있는 것이다. 즉 어떤 나라가 일정량을 수출하면 그 나라의 전체 쿼터에서 수출된 물량을 공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출국을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 쿼터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섬유류를 수입하는 선진국과 섬유류를 수출하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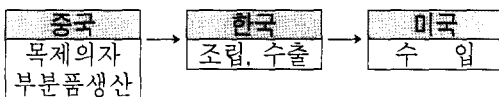
3) 수입선 다변화제도

지금쯤은 점차 품목이 줄어들고 있지만 수입선 다변화제도도 좋은 사례이다. 이 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기업을 보호하고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품목은 일본산을 수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수입선 다변화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이를 직접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가 최종 생산한 제품이라도 핵심부품이 일본산이거나 일본산 부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산으로 간주되어 역시 수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른 나라가 생산한 제품중 일본산 부품이 대부분인 경우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회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산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원산지규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4) 반덤핑제도 및 상계관세제도

또 다른 중요한 비특혜 무역제도로 반덤핑 제도 및 상계관세제도가 있다. 반덤핑 제도는 수출자가 자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에 덤핑 판매를 함으로써 그 나라의 동종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당해물품에 대하여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계관세제도는 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으로 부여된 보조금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수출촉진이나 수입억제 등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함으로써 자국의 경쟁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수입국이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반덤핑 제도나 상계관세제도는 기본적으로 특정국가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역시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다.

한편 이들 제도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우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목재 의자에 대해 미국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목재 의자 부분품을 수입한 후 이를 조립하여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하면 과연 한국이 수출하는 의자도 중국산과 동일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는가가 바로 우회문제이다. (목재의자 부분품을 수출대상국, 즉 미국으로 반입하여 조립 생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로 볼 수 있다)



만약 한국에서 수행된 조립공정에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최종 생산된 제품도 계속 중국산 제품으로 간주되며, 이를 미국에 수출한다면 이 물품 역시 중국산 제품

의 우회덤핑이 되어 별도의 조사없이 중국산과 동일하게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이에 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으며 현재 WTO에서 논의중이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반덤핑 제도나 상계관세제도의 운영에도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다.

5) 무역통계

또 다른 예로 무역통계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무역통계는 국가별로 품목별 수출입량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무역흑자를 많이 기록하게 되면 (즉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항상 상대국으로부터 무역균형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달리 말하면 적자를 기록한 나라로부터 수입을 늘리라는 통상압력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제3국에 수출할 경우 최종 생산품이 우리나라 제품으로 간주된다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통상압력을 더 받게 될 것이다.

6) 기타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원산지규정이 필요한 비특혜 무역제도의 몇가지 사례이며 그 외에도 할당관세, 긴급수량제한제도, 정부조달제도 등 원산지 식별이 필요한 여러 무역제도에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다. 위의 사례와 같이 비특혜 무역제도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비특혜 원산지규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나. 특혜 무역제도의 운영

특혜 무역제도는 관세특혜와 관련된 무역제도를 말하는데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자유무역협정 등이 대표적인 특혜 무역제도이다. 이와 같이 특혜 무역제도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이라 칭하기도 한다.

1)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먼저 GSP 제도를 살펴보자.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히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어느 개도국이 수출하는 무슨 품목에 대하여 관세특혜를 부여할 것인가는 특혜를 부여하는 선진국이 결정한다. 그리고 이 때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개도국산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도국이 수출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선진국이 정해 놓은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하여 개도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특혜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어떤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개도국산으로 볼 것인가 하는 원산지 판정기준은 특혜수혜여부 판단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2) 자유무역협정

GSP가 일방적인 특혜무역제도라면 자유무역협정은 쌍방적인 특혜무역제도이다. NAFTA, LAFTA, EC, ASEAN 등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은 지역별로 서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역내국산 제품에 대하여 무세 또는 저율 관세를 적용하면서 역외국산 제품에 대하여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역내국산 제품에 대하여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켜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라는 범세계적인 무역체제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중국 등 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라도 칠레, 남아공 등 대륙별 거점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 북한산 물품의 반입에 대한 특혜

위의 두 가지 제도와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우리나라에 독특한 제도로 북한산물품에 대한 특혜가 있다. 즉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중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동 제도는 남북교역을 통하여 교류를 촉진하고, 북한의 산업생산 기반을 확충시켜 향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이라하더라도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최근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일부 업자들이 중국산 원자재를 북한에서 단순가공하여 무관세로 반입을 기도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다. 기업의 부품조달 및 투자전략에 직접적 영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은 부품이나 원료조달 방법을 결정할 때나 해외투자시 원산지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효과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지역에 현지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EC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부품이나 원료를 조달함으로써 역내국산에만 부여되는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I. 원산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그러면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알아보

자.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에는 크게 다음 3가지 기준이 활용되고 있다. 이 3가지 기준은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상호 결합 또는 보완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이 방법은 원재료의 세번과 제조·가공을 거친 제품의 세번을 비교하여 원산지를 결정한다. 세번비교결과 기준으로 설정된 세번변경(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등)이 발생하면(즉 세번이 달라지면) 세번이 바뀌도록 공정을 수행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이다(즉 다음 사례에서는 철광석을 철강제품으로 만든 나라에 원산지가 인정된다).

철광석	(수입/제조·가공)	철강제품
세 번 : 2601.11		세 번 : 7203.10

여기서 세번(HS 번호)이라 함은 수출입 물품의 국제적 분류체제(Harmonized System, 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index)에 따른 품목분류 번호를 말한다. HS 번호는 우리나라의 경우 2-4-6-8-10단위의 분류단계가 있으며 단위 수가 클 수록 보다 세분화된 분류가 된다(HS 품목분류는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이며 8단위 이하는 각국이 실정에 맞도록 분류하고 있다).

HS 품목분류 체제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의 1차 소재를 출발물질로 하여 가공도별로 다양한 상품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성분별·용도별 분류를 추가하여 나열한 국제적인 상품 분류체제인데, 대다수국가가 이 분류체제를 이용하여 관세·무역통계 등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

HS 품목분류번호에 기초로 하는 세번변경 기준은 예측가능하고 간편한 기준이나 당초 HS 분류체계 자체가 원산지 판정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공정에 의하여 세번이 변경되거나, 중요공정이 수행되어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2.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

부가가치기준은 제조과정에서 일정한도 이상의 부가가치(예: 45%)를 충족한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것으로 이상적인 기준이나 계산이 복잡하며 환율, 인건비, 이윤, 회계제도 등에 따라 원산지가 비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3. 주요부품 및 공정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

이 방법은 품목별로 주요 부품이나 공정을 미리 지정하여 지정된 부품을 생산한 국가나 지정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자면 전기톱의 원산지는 내장된 모터생산국을 원산지로 본다던지, 형광등은 쉘링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본다는 식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주요부품 및 공정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명료하고 예측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주요부품이나 공정을 지정하기 어렵고 생산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한다는 문제가 있다.

Ⅲ. 주요국의 現行 원산지규정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주요국가들은 어떻게 원산지를 판

정하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은 어떠한가? WTO에서 진행중인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먼저 각국의 현행 원산지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가. 수입물품 원산지제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판정한다. 구체적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판정 기준〉

원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물품생산을 위한 모든 활동이 1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예: 광석 채취)	물품생산 활동이 2 이상의 국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물품생산 활동이 2이상의 국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데, 실질적 변형이 무엇인가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판단한다.

〈실질적 변형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정기준〉

	6단위 세번변경원칙	주요 부가가치기준 주요부품 변경기준
대상 품목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	23개 품목 (수입선다변화품목 등)
원산지 판정	원료의 6단위세번과 다른 6단위 세번에 분류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당해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 부가가치의 35% 이상을 생산 또는 공급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실질

적 변형여부를 세번변경원칙과 부가가치기준 (주요 부품 및 공정기준은 보완적 기준으로 사용)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원산지 판정기준은 비교적 단순하며 품목별 기준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외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한 물품도 수입물품 원산지 판정기준을 적용하며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단순가공의 사례〉

생산활동	원산지판정 및 표시
중국산 한약재 → 수입후 절단	중 국
중국산 고사리 → 수입후 건조	중 국
미국산 밀가루(벌크) → 수입후 분할·재포장	미 국

나. 수출물품 원산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수입국이 자국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즉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조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는 판정기준은 현재 나라마다 서로 다르다. 따라서 현행 대외 무역법령은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표시방법만을 통일하여 'Made in Korea'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2. 주요국가의 원산지규정

현재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즉 동일한 생산과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는 어느 나라로 수출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판정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과 EC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 국	E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도 제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 운영되고 있음. - 원산지표시, 수량제한, 덤핑방지 관세부과, GSP, 자유무역협정 등에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이 각각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을 운영 - 특히 비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판정기준이 매우 추상적 ('경제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생산에 적합한 시설이 있으며 새로운 물품을 생산하거나 제조의 중요한 단계를 구성하는 최종 실질적 공정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국가는 나라마다 서로 다른 판정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다. 처음에 살펴본 양복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어떤 나라는 '봉제국'을 원산지로 보거나 하면 다른 나라는 '재단국'을 원산지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EC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물품에 대하여도 적용제도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정이 나라마다 서로 달라 예측가능성·투명성이 부족하고 복잡하다 보니 우리나라, 일본 등과 같은 수출국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밖에 없다. WTO 설립시 일본을 비롯한 수출국이 선진국의 자의적 원산지규정 운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규정협정 체결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WTO 원산지규정협정이 체결되었다.

IV. WTO 원산지규정협정에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나

그러면 WTO 원산지규정협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자. 협정은 크게 적용범

위,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전후에 각국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 원산지규정에 대한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적용범위

WTO 원산지규정협정은 비특혜 원산지규정만을 대상으로 한다. 협정체결시 특혜 원산지규정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국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나 EC, 캐나다 등의 제안에 따라 특혜 원산지 규정은 제외되었다.

2.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

WTO 원산지규정협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라마다 원산지 판정기준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교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비특혜 원산지규정을 통일하도록, 즉 통일원산지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 작업을 수행할 기구,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원칙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3. 원산지규정에 관하여 각국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

협정은 또한 통일원산지규정 전후에 각국이 원산지규정을 운영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산지규정은 명료하게 규정되어야 함
- 원산지규정이 통상정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간접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 원산지규정이 무역을 제한, 왜곡 및 착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원산지규정은 국내산 여부 판정시 적용되는 규정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되며 모든 나라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원산지규정은 일관되고 통일되게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 원산지규정은 포지티브 기준 즉,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네거티브 기준은 포지티브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각국의 법령은 공표되어야 함
- 원산지 판정 요청이 있을 때 결정은 가능한 빨리, 늦어도 15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원산지규정의 개정 또는 신규정 도입시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됨
- 원산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공된 모든 정보는 관련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함

V.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1. 작업기구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은 세계관세기구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 설치되어 있는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TCRO;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와 WTO에 설치되어 있는 원산지규정위원회(CRO;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의 공동 작업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TCRO)에서는 먼저 품목별로 2차에 걸쳐 기술적 검토를 진행한다. 1단계는 각국이 품목별로 자국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안을 제안하는 단계이며, 2차 검토는 각국이 자국이 주장하는 제안에 대하여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 검토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WTO의 원산지규정위원회(CRO)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고, 미합의된 사항은 WTO로 송부되어 원산지규정위원회가 결정한다.

기술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검토는 기술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기 보다는 각국이 자국에게 유리한 입장을 기술적으로 합리화하는 성격을 지닌다.

WTO 원산지규정위원회(CRO)에서 이와 같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는 WTO 각료이사회로 송부되며 전체 작업결과 승인과 함께 통일원산지규정의 시행일자 등을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각국은 원산지규정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2. 작업시한

〈표 1〉

작업기구	주요업무	방식	비고
WCO(세계관세기구)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TCRO)	1차 : 제안 2차 : 기술적 근거 제시	기술적 검토	미합의 사항은 WTO로 송부
WTO 원산지규정위원회(CRO)	· WCO합의 사항 승인 · 미결쟁점사항 결정	정책적 결정	WCO에서 합의된 사항은 재론 불가
WTO 각료이사회	종료시 전체 작업결과 승인, 시행일자 확정 등		

WTO 원산지규정협정은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을 작업개시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협정문 제9조).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은 '95.7월에 시작되었으므로 3년이 되는 시점은 '98.7월이었으나 이때까지 작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99.11월까지 시한이 연장되었으며 현재 작업 계속되고 있다.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주요국가가 기한내 완료를 목표로 짧은 기간내 여러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협정에 규정된 작업시한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것은 크게 다음 두가지 원인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WCO에서의 기술적 검토가 작업량이 방대하여 많은 시간 소요되었으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원산지 규정보다 복잡한 개념과 제안들이 쏟아진 점은 이같은 사실을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 EC는 동 일정이 당초부터 무리한 계획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둘째 WTO에서의 의견절충 작업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WTO에서는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 검토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는 논의자체가 쉽지 않고,

각국의 이해가 상반되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도출도 어렵기 때문이다.

3. 작업일정 및 현황

원산지규정협정은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을 기간별로 3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 작업은 '완전생산' 및 '최소가공'에 대한 정의를 개발하는 것인데 원산지규정협정은 동 작업을 작업개시 3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동 분야의 작업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미결쟁점사항은 WTO로 송부되었으므로 WTO의 결정만이 남아 있다.

2단계 작업은 세번변경을 기초로 실질적 변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3단계 작업은 세번변경기준 이외의 실질적 변형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협정은 이와 같은 작업을 각각 1년 3개월 및 2년 3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작업과정을 보면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안하면서 각국은 세번변경기준 뿐 만 아니라 부가가치기준이나 공정별 기준도 함께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작업과 3단계작업이 함께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2, 3단계 작

〈표 2〉

단 계	작 업 내 용	비 고
1 단 계	· 1개국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완전생산, Wholly obtained) 및 ·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은 가공·공정(최소가공, Minimal operations or processes)에 대한 기준 개발	3개월 이내
2 단 계	· 생산활동이 2이상의 국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최종 실질적 변형(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품목별기준을 HS품목분류의 세번변경을 토대로 개발	2년 3개월 이내
3 단 계	· 세번변경기준이 불충분한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보완 기준 개발	

업의 주요과제인 쟁점사항 선별 및 대안작성 작업은 99.5월말에 개최된 회의를 끝으로 일단락 되었으며 WTO로 미결쟁점사항이 송부되었다.

한편 상기 3단계외에 협정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일원산지규정의 전체체제(Overall architecture)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전체체제는 간단히 말하면 통일원산지규정의 법조문화 작업으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一般規定인데 동 분야에 대한 쟁점사항도 WTO로 송부되었다.

지금까지 논의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통일원산지규정의 구조를 살펴보자. 통일원산지규정은 크게 서문, 일반규정 및 첨부 1-3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핵심부분은 세번별로 원산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첨부 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될 것이다.

서문(Preamble)

일반규정(General Rules) : 적용범위, 정의규정, 원산지결정 방법 등

첨 부 1 (Appendix 1) : 완전생산물품 (Wholly Obtained Goods)

첨 부 2 (Appendix 2) :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첨 부 3 (Appendix 3) : 최소가공 또는 공정 (Minimal Operations or Processes)

Ⅶ. 통일원산지규정은 현재까지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졌나

주류에 대한 쟁점사항을 논의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에 관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작업결과를 간단히 살펴보자.

1. 전체체제(Overall architecture)에 대한 논의내용

전체체제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인데 예를 들면 하나의 물품에 2이상의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곡물이나 석탄 등과 같이 여러나라의 물품이 혼합되는 경우 어떻게 원산지를 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복잡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 완전생산물품(Wholly Obtained Goods)의 정의에 대한 논의내용

현재까지 논의를 통하여 한 국가내에서 (within a single country) 완전히 획득(생산)된 농,림,수,광산물의 당해국에 원산지를 인정하며 완전생산물품만(solely)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 또한 완전생산물품으로 인정하기로 합의되었다. 다만 중고제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획득된 수산물과 심해광산물, 공해상에서 획득된 물품을 선박등록국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경우 '등록'의 개념 등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은 WTO로 송부된 상태이다.

3. 최소가공 또는 공정(Minimal Operations or Processes)의 정의에 대한 논의내용

최소가공 또는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가공 또는 공정으로서 원산지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최소가공으로 합의된 것들은 다음 3가지이다.

- 가. 운송/보관 목적으로 양호한 상태로의 물품 보존을 확보하기 위한 가공활동
- 나.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

다. 판매 목적의 물품 포장 또는 presentation
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상기 최소가공에 포함되는 사례로 건조(drying), 냉동(chilling), 전리(ionizing), 탈각(husking), 씨제거(shelling), 가염(salting) 등 20여개 공정이 예시되어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4. 실질적 변형에 관한 품목별 기준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실질적 변형기준은 제조공정에 2이상의 국

가가 관련된 경우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품목별 기준이라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주요국의 입장은 다음표에서 보듯이 분야별로 다양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국은 특정품목에 대해 자국이 수입국인 경우·원료생산국인 경우·현재 자국 물품의 제품 이미지가 높은 경우 등은 원산지 인정에 엄격한 입장을 보인 반면, 자국이 특정품목의 수출국인 경우·원료를 수입가공하는 경우·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등은 가급적 폭넓은 공정에 원산지를 인정하려는 입장을 보여왔다.

품 목	정점 사항	우리입장(입장유사 국가)	주요국 입장
신 발	formed upper로부터 완성품 제조 공정	원산지 인정 (일본, 태국)	불인정 (미국, EU, 홍콩 캐나다)
직 물	염색, 날염 공정	각 공정 인정(EC)	동시수행시 인정(미, 일) 불인정(멕시코, 브라질)
직 물	침투, 도포 가공	인정 (스위스, 인도)	불인정(미국) 부분적으로만 인정(일본)
의 류	직물생산, 재단, 봉제 중 원산지 인정 공정	3개 공정중 2개 공정 수행국	봉제국(미국, EU, 일본) 재단 및 봉제국(브라질 등)
철 강	열연, 냉연, 표면 처리강판 생산공정	원산지 인정 (EC, 일본)	원산지 불인정 (미국, 캐나다)
철 강	선재생산공정	원산지 인정 (일본, 필리핀)	횡단면을 50%이상 또는 3mm이하로 축소(미국)
도 자 기	유약처리 공정	원산지 불인정 (미국, 캐나다)	원산지 인정 (필리핀, 스위스, 일본)
시 계	수입무브먼트를 이용한 시계 생산	조립국 인정 (일본, 스위스)	무브먼트 생산국 (미국, 홍콩)
기 계 류	부가가치 기준 인정 여부	반대(미국, 일본 등 대다수국가)	45% 부가가치(EC)
자 동 차	엔진장착 샴시를 수입 완성차 생산	원산지 불인정 (캐나다)	원산지 인정 (미국, 일본, EC 등)
반 도 체	mounting, testing, programming 공정	불인정	mounting(일본), testing(싱가포르), programming(미국) 인정

품 목	정 점 사 황	우리입장(입장유사 국가)	주요국 입장입장
T V	CRT를 수입하여 완제품 생산	조립공정 인정 (일본)	CRT 생산국(미국)
베 어 링	부분품을 수입하여 완제품 베어링을 조립하는 공정	내외륜을 열처리, 연삭가 공한 국가(미국, 일본)	조립공정 인정 (스위스, 싱가포르)
골 프 채	부분품 조립공정	원산지 인정(미국)	원산지 불인정(일본, 스위스)
안 경 테	부분품 조립공정	원산지 인정 (홍콩, 싱가포르)	원산지 불인정(일본), 도금 공 정 수반시 인정(미국), 렌즈 또는 테 생산시 인정(캐나다)
인 형	부분품 조립공정	원산지 불인정(일본)	원산지 인정(미국, 캐나다)
지 퍼	부분품 조립공정	원산지 불인정(일본)	원산지 인정(미국, 캐나다)
렌 즈	연마, 코팅, mounting 공정	원산지 인정 (스위스, 캐나다)	원산지 불인정 (미국, 일본, 멕시코)
라 이 터	조립공정	원산지 불인정 (일본, EC)	원산지 인정 (미국, 필리핀, 캐나다)
블 펜	수입 불펜심으로 완제품 생산	원산지 불인정 (미국, 멕시코)	원산지 인정 (스위스, 필리핀)
가 축	사육, 양식 등	원산지 인정 (EC, 일본)	원산지 불인정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당 류	조당의 정제	원산지 인정 (EC, 일본)	원산지 불인정 (필리핀, 인도, 캐나다)
낙농제품	우유로부터 유제품 생산	원산지 불인정 (미국, 캐나다)	원산지 인정 (일본, 뉴질랜드, 홍콩)
차와커피	차, 커피 등의 혼합	원산지 불인정 (인도, 콜롬비아)	원산지 인정 (미국, 일본, EC)
음 료	주스생산	원산지 인정(일본, 홍콩)	원산지 불인정(미국, 브라질)
식 물 성 액 즈	인삼 등으로부터 액즙 제조공정	원산지 불인정 (EC, 필리핀)	원산지 인정 (일본)
세 트 물 품	공구세트, 구급상자 등 세트로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 방법	검토중	세트화공정(말레이시아), 핵심구성품 생산국(일본), 다수물품 생산국(미국), 최고가물품 생산국(EC)
분 해 된 물 품	분해공정을 거친 물품의 원산지 결정방법	검토중	1) 부품 자체를 생산한 국가 2) 분해이전 물품의 원산지 3) 부품을 수거한 나라
화 학 제 품	화학반응, 혼합물 제조, 정제, 입자 크기의 변화, 이성질체 분리, 추출, 부가가치기준 등을 화학제 품분야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검토중(품목별로 일부는 적용 배제)		

Ⅷ. 주류에 대하여는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원산지규정의 개념과 WTO 원산지규정협정 및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우리는 특정품목에 대한 쟁점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갖춘 셈이다. 본격적으로 주류에 대한 논의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HS 분류체제중 22류(Chapter = 2단위 분류)에는 음료·알콜 및 식초(Beverages, spirits and vinegar)이 분류된다. 22류는 다시 2201(물과 얼음 및 눈)부터 2209(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까지 9개의 세분류가 있다. 이 중 2203(맥주)부터 2208[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의 것에 한한다),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정음료]까지가 주류에 해당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순서대로 지금까지 논의결과 및 미결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논의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먼저 자주 사용되는 기본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에 있는 CTH, CTHS 등은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세번변경 기준을 채택할 때 쓰이는 용어들로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맥주

HS번호 : 2203
품 명 : 맥주(Beer made from malt)
원산지 판정 기준 : CTH
비 고 : 합의사항 (Basket 1)

위에서 보듯이 맥주에 대하여는 원산지기술 위원회에서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가 채택되었다. CTH 기준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맥주 원료 즉 대맥, 소맥, 물, 홉, 당, 착색제, 이산화탄소 등 맥주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 이들은 모두 2203에 분류되지 않는다 - 를 이용하여 2203에 분류되는 맥주를 생산하는 공정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는 뜻이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4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공정은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2203에 분류되는 진공-농축맥주(vacuum - condensing beer)를 수입하여 농축맥주를 조제하는 공정은 공정전의 원료물품과 공정후의 생산물품이 모두 2203에 분류되기 때문에 4단위 세번이 바뀌지 않아 당해 공정에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대해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제조가공 결과 HS 세번분류상 4단위 세번이 변경될 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CTHS	4단위 분할세번변경기준(Change of split tariff heading), 단순한 4단위 세번변경 및 4단위 세번內의 변화에도 원산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기준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subheading), 제조가공 결과 6단위 세번이 변경될 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CTSHS	6단위 분할세번변경기준(Change of split tariff subheading), 단순한 6단위 세번변경 및 6단위 세번內의 변화에도 원산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기준

석은 이하 다른 품목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포도주와 포도즙

HS 구조를 보면 2204.21과 2204.29는 용기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어 원산지 판정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두 세번을 묶어 인위적으로 포도주[ex(a) Wine]와 알콜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ex(b) Grape must]으로 세번을 분할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먼저 포도를 수입하여 포도주(Wine, other than sparkling wine in containers holding 2l or less)를 생산하는 공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각국의 제안은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비슷한 논리와 해석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첫번째 경우를 자세히 따져 보기로 한다.

1) EC, 칠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포도의 품질이 포도주의 품질을 결정한다며 포도 생산국이 포도주의 원산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는 국가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가 자국으로부터 포도를

수입하여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더라도 계속해서 포도 생산국산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A 나라가 프랑스산 포도를 수입하여 프랑스산 포도주와 유사하게 좋은 또는 더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생산하여 A국산으로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포도주라면 프랑스산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다가도 'A국산 포도주도 프랑스산 포도주 못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현재 프랑스산 포도주가 누리고 있는 명성은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EC 등의 국가는 이런 점을 걱정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2) 호주는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를 제안하면서 8류로부터의 변화는 제외한다는 제안을 하였는데, 8류(식용의 과실 등)에 포도가 분류되기 때문에 EC 등과 유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다수국산 포도주가 Blending되는 경우 85% 이상을 생산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하고, 1개국이 85%미만을 생산한 경우에는 Blending을 한 나라를 원산

HS번호	품 명	원산지 판정기준	비 고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여,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10	발포성 포도주	미합의	WTO에서 논의중
2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콜첨가에 의해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		
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미합의	WTO에서 논의중
29	기타		
30	기타 포도즙	미합의	WTO에서 논의중

지로 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는 Blending 공정도 상당한 노하우를 요하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이다.

- 3) 캐나다는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제안하면서 2204.21 또는 2204.29로부터의 변화는 제외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는 2204내에서의 6단위 세번변경도 원산지가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즉 기타 포도즙(2204.30)을 수입하여 포도주를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캐나다는 수입산이 25%미만이면 Blending한 국가를 원산지로 볼 것도 아울러 제안하였다.
- 4) 미국은 CTSHS(6단위 분할세번변경기준)을 제안하면서 2204.29로부터의 변화는 제외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는 포도로부터 포도주를 생산하는 공정뿐만 아니라 2204.21, 2204.30에 분류되는 포도즙을 수입하여 포도주를 생산하는 공정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자는 제안이다.
- 5) 일본은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제안하면서 이 변화가 단지 소매용으로 병입하는 공정만에 의한 세번변경일 경우에는 제외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 6) 이외 스위스·이집트가 CTH를, 홍콩·말레이시아·멕시코가 CTSH 기준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이 제안하는 내용은 나라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엄격한 기준부터 완화된 기준까지 각양각색이다. 이같은 입장차이가 원산지기술위원회의 기술적 검토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미결쟁집사항으로 WTO에 송부된 상태이다.

□ 다음으로 포도로부터 포도즙(Grape must with fermentation arrested or prevented by the addition of alcohol in

containers holding more than 2l)을 생산하는 공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국의 기본입장은 포도주에 대한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 즉,

- 1) 포도와 포도즙은 성격이 다른 물품이므로 포도를 수입하여 포도즙을 생산하는 공정에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 2) 일정조건하에서의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 및
- 3) 포도즙의 본질적 특성은 포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도생산국이 원산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 등이 대립되고 있다.

□ 그리고 포도주 논의시 부분적으로 언급된 Blending에 대하여도 각국 입장이 큰 차이가 있는 바,

- 1) Blending이 기술과 경험을 요하는 것이므로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 2) 한 국가가 생산한 양이 부피기준으로 85%미만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
- 3) Blending 자체는 혼합공정에 불과하므로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고, 2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 Blending되는 경우에는 전체체제(Overall architecture)의 원칙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체체제에는 잔여기준(Residual rule)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각국의 제안을 보면 원료의 가치(value)·무게·부피 등 적절한 기준으로 평가해 볼 때 가장 큰 기여를 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 원료의 가공공정(processing activities)의 가치까지 포함하여 가장 큰 기여를 한 나라를 원산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

여한 나라를 원산지로 보자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3. 베르뭇(Vermouth) 등

HS번호 : 2206
품 명 :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원산지 판정 기준 : CTH
비 고 : 합의사항 (Basket 1)

베르뭇과 기타 유사한 포도주에 대하여는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로 합의되었다.

4. 기타의 발효주 등

HS번호 : 2206
품 명 : 기타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 파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음료와의 혼합물
원산지 판정 기준 : CTH
비 고 : 합의사항 (Basket 1)

2206세번에 대하여도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로 합의되었다.

5. 에틸알콜(알콜용량 80% 이상) 등

동 세번에는 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이다.

각국의 제안을 살펴보자

1) 코스타리카는 동 세번에 속하는 물품의

원산지는 사탕수수·사탕무우·포도 등 알콜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생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고, 80%이상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 주정을 농축(concentration)·증류(distillation)·기타 다른 공정에 의하여 변화시키는 공정에도 원산지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2) 캐나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피지, 구아테말라 등은 CTH기준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2208로부터의 변화에 원산지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2208로부터 2207로의 세번변경은 회석 또는 변성(denaturing)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제안은 양자에 대해 모두 원산지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3) 미국, EC, 스위스, 홍콩, 이집트, 노르웨이, 멕시코 등은 CTH기준을 제안하면서 2208로부터의 변화는 제외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4) 우리나라와 일본은 CTH외에 2207세번 내에서 정제(purification) 공정도 원산지를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당량의 조주정을 수입하여 정제공정 등을 거쳐 소주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정제공정에 원산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Technical file을 통하여 조주정은 발효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물질에 따라 메탄올, 알데히드, fusel oil 등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주제조에 적합하지 않으며, 여러단계의 정제공정을 거쳐 무색, 무취의 순수 에틸알콜로 정제되어야 소주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정제전후의 에틸알콜은 화학적 측면에서 전혀 다른 제품이므로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은 유사하나

HS번호	품 명	원산지 판정기준	비 고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의 것에 한한다)	미합의	WTO에서 논의중
20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미합의	WTO에서 논의중

일본은 2207.20(변성된 것)에 대하여는 정제공정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순수한 에틸알콜을 희석하여 만든 주류를 즐기는 민족은 지구상에 예가 많지 않아 정제공정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주장한 나라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6. 에틸알콜(알콜용량 80% 미만) 등

소주가 포함되기 때문에 2208 역시 우리나라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이다. 2208 세 번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다수의 6단위가 포함되어 있으나 각나라의 입장은 유사하다. 각국의 제안내용을 살펴보자.

HS번호	품 명	원산지 판정기준	비 고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의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및 기타 주정 음료		
20	포도주 또는 포도주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미합의	WTO에서 논의중
30	위스키류	미합의	WTO에서 논의중
40	럼 및 태피아	미합의	WTO에서 논의중
50	진 및 제네바	미합의	WTO에서 논의중
60	보드카	미합의	WTO에서 논의중
70	리큐르류 및 코디얼	미합의	WTO에서 논의중
90	기타(소주포함)	미합의	WTO에서 논의중

- 1) EC, 이집트,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피지 등은 CTH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는 2207을 수입하여 2208에 분류되는 주류를 생산하는 공정에 원산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Technical file을 통하여 소주 샘플과 함께 제조공정을 소개하고 동 공정이 에틸알콜을 단순히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색, 무취의 에틸알콜에 stevioside, oligosaccharide와 같은 감미료, 구연산, 아미노산 등 다수의 미량원소를 첨가하여 독특한 맛을 내는 공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량원소의 조합과 제조자의 노하우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므로 실질적 변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2)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뉴질랜드 등은 CTH 기준을 제안하면서 2207로부터의 변화는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캐나다가 2208에 대하여 증류주의 향미를 위한 알콜 base 사용을 용인하기 위하여 10%의 微小條項 (De Minimis)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소조항은 적은 부분의 수입산 원료 때문에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을 무시하고 원산지를 인정하자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원칙필요한지 여부는 다른 물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체제(Overall architecture)의 쟁점사항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각국 의견은 공장도 가격기준으로 20% 미만의 비자국산 물품의 사용은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스위스), 거래가격 기준으로 7% 미만의 비자국산 물품은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 이와 같은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 등이 제시되고 있다.

- 3) 홍콩은 CTHS 기준을 제안하면서 2207로부터의 변화는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도 우리나라 입장과 다른 것이다.
- 4) 미국은 CTHS (CTH, CTHS) 기준을 제안하면서 2207 및 2106.90(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로부터의 변화를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는 바, 이 제안도 우리나라 의견과 다른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2208.90에 분류되는 Kirschwasser(야생 cherry로 만든 무색 브랜드)와 ratafia(복숭아, 살구 따위의 仁으로 맛을 낸 리큐르, 과일주)에 대하여 CTHS except from 2106.90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이는 고농도 알콜주정(2207)으로부터의 변화 및 2208 내에서의 6단위 변화에도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 5) 일본은 CTHS 기준과 Blending 공정과 병입공정이 함께 이루어질 때 원산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은 소주 제조공정은 몰로 2208 내에서의 6단위 변화에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Ⅷ. 우리나라의 대응경과는 어떠 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었나

1. 우리나라의 대응경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 과정은 품목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야별로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제조공정 및 관련기술, 산업별 수출입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입장을 정립하고 주요국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또 관련업계의 관심과 지원도 필수적이다. 그래야

만 우리나라에 유리한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농림부, 관세청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왔다. 특히 산업자원부에서는 업계홍보, 주요국 입장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품목별 제안서 제출, 기술적 근거(Technical file) 작성 제출, 견품제시 및 비디오상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품목별 원산지규정제정안 작성 지침서” 발간·배포('97.3), 설명회 개최외에 무역협회와 함께 HS 전품목에 걸친 각국제안을 취합한 책자를 발간, 업계 및 관련부처에 배포('97.8)하였다.

2. 문제점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작업량, 작업의 기술적 성격, 작업기간의 장기화와 함께 비효율적인 정부조직 때문에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 작업만을 위하여 품목별로 전문가를 두고 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방대한 작업을 한 두 사람이, 그것도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으로 업계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의 완료 및 시행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으로 파급효과는 크나 시급한 현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업계의 인식을 불충분하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정부 및 민간부문(특히 협회등 업종별 단체)의 조직축소 여파로 동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수많은 품목 중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것이다. 또 전문가 활용도 쉽지 않았다. 특정분야

전체에 대한 전문지식, 언어능력, 국제회의 감각 등을 갖춘 전문가를 예산계약하에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다행히 주류분야는 전체품목 중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대응을 잘 해온 분야라고할 수 있다. 특히 주류공업협회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자국의견을 제시할 때는 기술적, 논리적 근거를 잘 제시하여야 한다. 협회의 도움을 받아 작성 제출한 주정 정제공정 및 소주제조공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Technical file은 소주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IX. 향후전망은 어떠하며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1. 향후전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9.5월 회의를 끝으로 기술적 검토가 일단락 되고 미결쟁점사항이 모두 WTO로 송부되었으므로 이제 WTO에서의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다만 쟁점사항이 많고 각국 입장차이가 커 연장된 작업시한인 '99.11월까지 전체작업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대응방안

가. 입장유사국과 공동 대응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은 다자간 작업이므로 품목별 입장 유사국가와 공동대응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안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자국입장을 유지, 관철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쟁점사항별로 입장이 같은 나라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정의 정제

공정에 대하여 수입주정으로 우리나라 소주와 비슷한 소주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이 같은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나. 업계의 지속적 관심

우리부에서는 작업진행 경과, 중요쟁점사항

논의동향 등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이 글도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 업계에서도 통일원산지규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우리입장 반영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지속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德者才之主, 才者德之奴, 有才無德, 如家無主而奴用事矣.
幾何不魍魎猖狂

덕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의 종이다. 그러므로, 재능은 있으되 덕이 없는 것은 마치 집에 주인이 없고 종이 좌지우지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도깨비가 마구 날뛰지 않겠는가!

- 菜根譚 중에서 -